

용인 경남아너스빌디센트(H1블록) 단지 내 상가 입점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공동주택과 -9386호(2024.11.01.)로 공급신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147-19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H1BL 아파트 단지 내 상가
- 공급규모 : 438.8048㎡, 1개 동 9개 호실
- 공급대상 : 근린생활시설(지상1층, 9개 점포)

I 공급금액 및 시설용도, 공급 방법

1. 공급면적 및 금액

[단위 : ㎡, 원 (VAT 포함)]

구 분	공 급 면 적				내 정 가 격				비 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 계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내정가		
제 2 종 근 린 생 활 시 설	1호	36.9000	8.5067	45.4067	27.0715	82,170,000	164,830,000	16,483,000	263,483,000	
	2호	36.9000	8.5063	45.4063	27.0709	74,520,000	149,480,000	14,948,000	238,948,000	
	3호	45.3800	10.4611	55.8411	33.2921	82,500,000	165,500,000	16,550,000	264,550,000	
	4호	36.9000	8.5063	45.4063	27.0709	74,520,000	149,480,000	14,948,000	238,948,000	
	5호	36.9000	8.5063	45.4063	27.0709	74,520,000	149,480,000	14,948,000	238,948,000	
	6호	36.9000	8.5063	45.4063	27.0709	74,520,000	149,480,000	14,948,000	238,948,000	
	7호	36.9000	8.5063	45.4063	27.0709	74,520,000	149,480,000	14,948,000	238,948,000	
	8호	44.8200	10.3320	55.1520	32.8813	88,830,000	178,170,000	17,817,000	284,817,000	
	9호	45.0000	10.3735	55.3735	33.0133	88,990,000	178,510,000	17,851,000	285,351,000	
	소 계	356.6000	82.2048	438.8048	261.6127	715,090,000	1,434,410,000	143,441,000	2,292,941,000	

※ 공동주택 5개동 326세대

※ 내정가격은 토지부분과 건물부분(VAT 포함)의 합계금액이며, 각 호실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호실(호수) 명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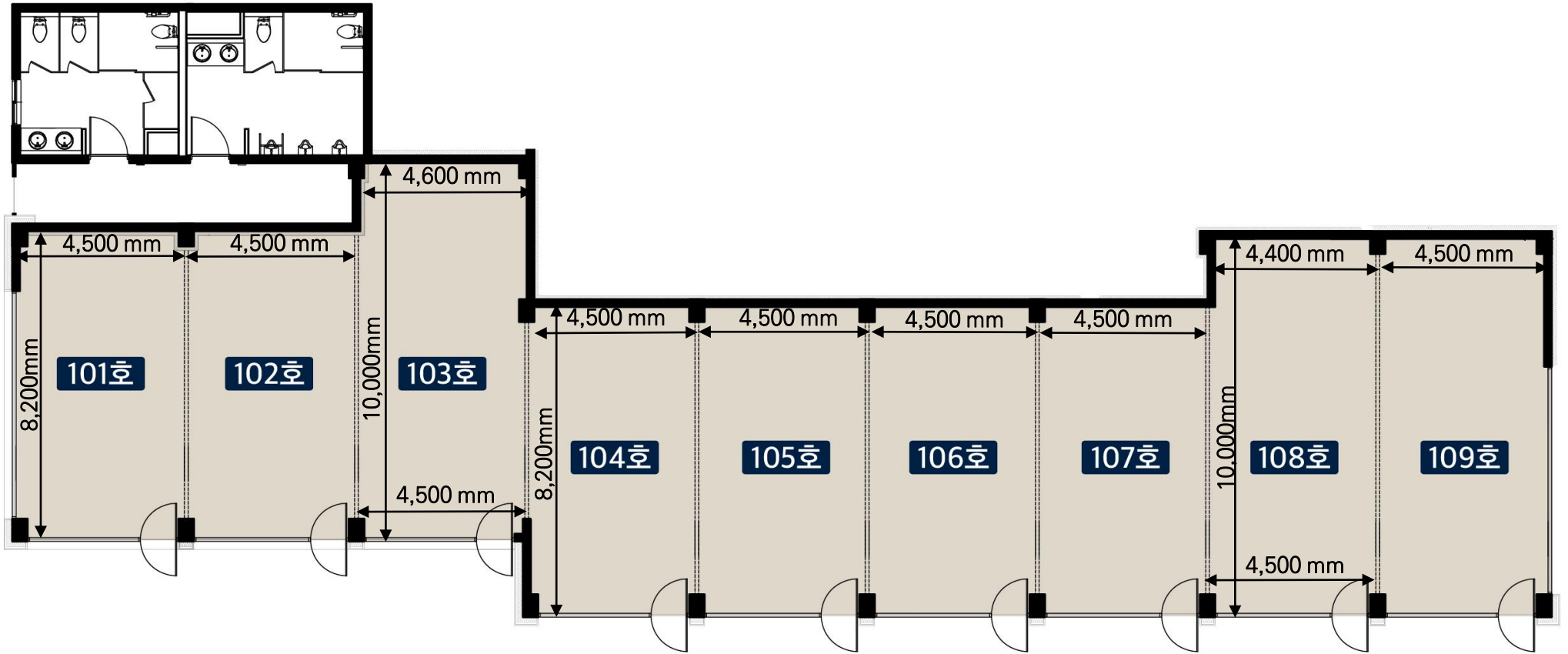
※ 상기 호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지분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지분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 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시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 x 0.3025)

※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기둥이 있는 호실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동호 배치도



3. 호실별 시설용도 사용 규정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시 설 용 도		권 장 용 도
근린 생활 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등(50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영화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500㎡ 미만)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500㎡ 미만) - 서점·사진관·표구점·독서실·기원 - 일반음식점·동물병원·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등을 위한 시설 제외), 직업 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500㎡ 미만) - 테니스장·체력 단련장·볼링장·당구장·에어로빅장·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500㎡ 미만) - 금융업소500㎡ 미만, 사무소500㎡ 미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소개업소500㎡ 미만, 출판사 등(500㎡미만)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단,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합계의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이 있으니, 관련 법령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점(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및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3) 항목별 이용 가능 용도 및 허가면적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입점업종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5)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용도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고 입점시 및 입점 후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업종보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합니다.
- 7) 담배소매업 소매인지정 신청 관련은 관할 관청 소관사항이므로 직접 관할 관청으로 문의·신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해당 상권 내 담배소매업 소매인지정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담배소매업 소매인지정 신청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공급방법 : 내정가 공개 최고가 경쟁입찰(유찰시 별도의 공고 없이 당사에서 임의 분양함)

※ 입찰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 (단, 같은 호실에 중복입찰할 수 없음.)

1. 입찰시 유의사항

- 1) 입찰신청자는 입찰참여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상가 위치 등을 확인하고, 분양공고, 점포용도, 계약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 상가분양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미확인에 따른 민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당 입찰은 전 점포 일괄 공개 경쟁 입찰로 입찰희망점포를 지정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금액은 면적에 관계없이 호실당 총액(부가세 포함)을 기재한 후 입찰한 각 점포 별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 3) 입찰보증금은 각 점포별로 일천만원(10,000,000원)으로 하며 지정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수납 불가)
- 4) 입찰금액은 내정가 이상으로 십만원 단위까지만 참여 가능하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만 인정하며, 총액(부가세 포함) 외 기재한 금액은 무효처리 합니다.
- 5) 입찰은 해당시간(13:30)까지 입찰서류를 입찰봉투에 넣으신 후 지정된 입찰함에 투찰하여야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교환·변경할 수 없습니다.
- 6) 입찰자는 정해진 입찰시간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자는 입찰포기로 간주합니다.
- 7) 입찰희망금액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고가 입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이오니, 입찰희망금액 결정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8) 입찰가격이 내정가 미만일 경우에는 유찰로 하며, 유찰된 점포 및 미입찰 호실은 본 입찰공고와 무관하게 당사에서 임의로 공급하며, 해당점포 차순위 입찰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9)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점포 낙찰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과 계약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 10)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소정 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
 - 입찰 신청을 하여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가 입찰한 경우
 - 동일인이 동일 호실에 2부 이상의 입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서에 기재한 금액 등 기타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 입찰서에 기명 날인이 누락된 경우(입찰참가신청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른 경우도 포함)
 -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 진행을 방해한 자가 입찰한 경우
- 11) 선순위 낙찰자 발생시 후순위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2. 낙찰자 결정방법

- 1) 내정가 이상으로 유효한 입찰을 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 낙찰자 발표 시 점포별 최고가 입찰자만 공개하고, 차순위 입찰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3) 입찰 공고기간 중 지정기간에 지정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입찰 참여한 건만 유효합니다.
- 4) 동일금액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자를 대상으로 즉석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추첨방법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해당점포 차순위 입찰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5) 입찰자가 1인일 경우라도 그 입찰금액이 당사 내정가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6)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의 계약 포기 또는 서류심사 부적격자 발견 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단, 내정가 이상일 경우에 한함)
- 7) 인당 입찰신청 점포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개의 점포를 낙찰받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1개 점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시 무효 처리함)
- 8) 입찰금액은 십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9) 연번 다구좌(연속된 점포 3개 이상 입찰) 입찰자를 개별 점포 입찰자보다 우선하여 선정하며 최다 점포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구좌 입찰자 중 타입찰자와 일부 호실이 중복되는 경우 입찰한 금액의 총액이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동일 호실수 입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그 외 연번 다구좌 낙찰자 결정 방식은 사업주체에서 정함.
- 10) H2BL 111호~113호, 114호~116호는 묶음호실로 개별 입찰이 불가합니다. (연번 다구좌 입찰만 가능)

3. 입찰(접수) 일시 및 구비서류

입찰(접수) 일시		<p>2024년 11월 7일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0부터 13:30까지 입찰 / 입찰 접수 마감 이후 14:00부터 개찰예정 - 입찰 : 인감도장(사용인감) 날인된 입찰서(당사 소경양식) 봉인상태로 제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에서 별도 공지 예정
입찰 및 개찰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57-17, 용인제일교회 3F 어쿠스틱홀 / 대표번호 1877-6954
구 비 서 류	본인 입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찰참가신청서(당사 소경양식, 현장배부) 1부 ② 입찰보증금 : [점포당 각 일천만원(10,000,000원) 지정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입찰보증금 환불용) ⑤ 개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제출)
	대리인 입찰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본인 입찰서류 외 ①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② 입찰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당사 소경양식) ③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위임용)
	개찰 및 낙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찰참가접수증 1부 (입찰신청시 당사 발급) ② 입찰서 1부 (입찰신청시 당사 발급) ③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 (입찰신청시 당사 발급)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시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입찰보증금은 해당 입찰시간 전까지 해당 계좌로 납부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찰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개별 입찰가격은 입찰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1) 입찰보증금 및 납부계좌

구분	입찰보증금	보증금 납부방법	보증금 납부계좌
전체공통적용	일천만원 (10,000,000원)	입찰신청 계좌에 무통장입금 (현금 수납 불가)	납부은행 : 수협은행 1130-0062-9037 예금주 : 경남기업㈜

※ 입찰보증금은 입찰 전 상기 계좌로 입금된 것만 인정하며, 계좌 입금 외 현금 수납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입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자 중 낙찰자의 계약 체결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유찰자)에게는 낙찰자 결정일의 익월 10일 이내에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은행계좌로 해당금액을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1금융권 자유입출금식 통장 이외의 기타 제2금융권, 증권계좌, 주택청약통장 등은 환불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1금융권 자유입출금식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할 것.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를 기재·제출하여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분양대금으로 자동 대체전환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정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체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로 귀속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공급금액 납부

1. 계약체결 일정 및 구비서류

- 계약일시 : 2024년 11월 07일 (목) 14:00 ~ 16:00
- 계약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57-17, 용인제일교회 3F 어쿠스틱홀
-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① 계약금 입금영수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인감도장 ⑥ 입찰보증금 영수증(입찰자 보관용) ⑦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7만 5천원
대리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 상기 본인 계약서류 외 ①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당사 소정양식) ③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위임용)

유의 사항	<p>※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찰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p> <p>※복수의 호실 계약시, 호실별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p>※계약자는 공급계약서 작성 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p> <p>※분양상가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일 기준 당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개인용)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후 과세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보하여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용)를 발급받아 과세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p> <p>(환급 가능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람)</p>
-------	---

2. 공급금액 납부일정 및 납부계좌

구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계약금 납부 후 14일 이내	계약금 10% 완납 후 30일 이내	
납부 금액 및 비율	일금 일천만원(₩10,000,000)	낙찰가의 10%에서 일천만원을 뺀 금액	낙찰가의 10%	낙찰가의 80%
납부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협은행	1130-0062-9087		경남기업(주)

- 1)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무통장 입금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1단지 101호 홍길동 → 1-101홍길동으로 기재)
- 3) 공급금액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 금액이고, 그 부가가치세는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4) 중도금 및 잔금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공급대금의 납부가 납부지정일보다 늦을 경우 해당 연체일에 대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6) 계약자는 공급대금 및 연체료 완납 이전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 요청 이전에 공급대금 및 연체료의 납부를 선이행하여야 합니다.
- 7)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조건

- 1)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2) 계약자는 필히 계약목적물을 현장방문 후 위치,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현장 및 주변상황을 확인하여 계약체결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V 입점 예정일

■ 입점예정일: 2024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개별 통지함)

- 1) 실제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점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2) 입점 지정일이 경과됨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일 이후의 상가관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합니다.
- 4) 본 근린생활시설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복리시설(상가 등) 건축물대장작성 및 건물 소유권이전은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1~2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담보대출 및 영업관련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V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신청자는 본 공급공고 및 유의사항을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점자(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향후 도로기반 시설의 변경 및 장애인 동선 확보에 따라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당일 입찰은 유의사항에 의거 진행되며 위배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급 규모 표시 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면적 m² ×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올림,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이 있을 시 공급가격 기준으로 정산처리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본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요청을 할 수 없으며, 주차장 및 공용공간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모집공고, 점포시설 용도 및 유의사항, 복리시설(상가 등) 출입구, 보도(인접 도로 포함)와의 표고차 및 각 실별 설치조건, 아파트 출입구 문주 설치 현황 및 계획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당사에서는 이를 확인 후 계약에 응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상가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 관리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이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대장 등록 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세부 용도(업종) 지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망, 공공기관 등)은 주변 개발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지역 개발상황에 따라 주변 여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개발상황에 따라 주변여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이나,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분양사업장, 평면도, 배치도, 호실위치, 내외부 기둥, 면적, 출입문, 층고, 계단 등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고물건은 미준공된 물건으로 설계상의 기본시설로만 매각하는 상가로서 내부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상가의 전기용량 및 가스시설, 급·배수, 냉난방시설은 계약체결 전 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의 추가설치, 증설, 계량기 등의 부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점포 내 별도 환기시설(주방배기) 및 냉난방시설(냉난방 장비, 전원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기기 설치로 인한 민원(실외기 소음 등) 해결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상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상호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각 호실의 용도는 근린생활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해당 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로 입점 할 경우, 용도변경 등의 비용은 입점자의 부담입니다.
- 학원, 교습소, 유치원 등의 용도로 개업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의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점자(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상가계약자들은 입점시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점시 및 입점 후 업종 중복이나 용도에 대하여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고 각 점포별 제반관리(공용부위 요금 포함 등)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서 자치관리하여야 합니다.
- 점포별로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입점시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하여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참조
- 입점상가의 간판 설치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간판을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해당 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조례 및 규칙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표기, 시공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자는 간판 설치 시 관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관계부서의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상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4, 5조 의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허가 및 신고 또는 승인 후 설치해야 하며, 에어컨 실외기는 미관을 고려하여 지정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배치상 펌프실, 급배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화장실 등에 인접한 호실에는 냄새, 장비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상기 시설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상가와 인접한 동의 입주자들로부터 상가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침해,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창호가 설치되는 외벽과 상가 외부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점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일부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분양된 점포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영업개설 인허가 등록,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추가사항 등)은 입점자(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점포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안에서 가능하며, 당해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허가받아야 합니다.
-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점검구의 추가설치,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 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될 경우 입점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약일시에 미계약된 호실은 변경(분할, 합병 등) 될 수 있습니다.
- 금번 입찰 이후 지정계약일에 계약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 점포에 대한 점포 구획(점포수·점포면적) 및 분양가격 등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외부 입면, 마감재 등 자문결과, 시공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주택법」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단지내상가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제반도면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상가현장을 답사하고 여건을 파악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점자(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과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모형과 CG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형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는 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셔야 하며,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기된 도로 등의 주변개발 조성계획(학교, 공공청사, 도로망 등 각종 시설 포함)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형태, 층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G 및 카탈로그, 조감도 등에 연출된 어닝디자인은 실제 시공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공용부 내외부 마감, 조형물, 조경 식재, 색채 등은 인허가 및 실시설계, 본 공사시 입점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된 기본마감 품목 외 전시/홍보 품목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전매와 관련한 내용은 정부의 정책 및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승인 및 분양금완납 이전에는 상가의 내·외부에 일체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기존 2개 매장을 1개 매장으로 구성 시, 기시공 칸막이 벽체 철거에 따른 비용은 입점자(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허가받아야 함. 또한, 호실 경계벽 중 제거 불가능한 벽체가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지구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주요사항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종교통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유통시설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장애인 동선확보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안전휀스, 신호등,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단지 주변의 교통시설물은 관계기관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상가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점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을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계획 및 설계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시설관련(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미인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접 현황 등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경계부는 인접대지 등과 바닥레벨에 차이가 있어 토목옹벽, 조경석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옹벽의 형태, 마감, 구간,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경계부 옹벽계획은 인접 단지와의 협의 및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실 시공시 옹벽의 종류, 디자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주변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설계 유의사항

- 본 건물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입면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인허가변경 결과에 따라 입점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된 공동주택사업장으로 각 시설용도에 따른 대지구획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지지분과 실제 사용 가용부분의 면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시 근린생활시설의 층별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입점할 수 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업종은 입점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 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용도 별 사용 부분에 대해 관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각각의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점포당 방범 셔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주차 H1BL(1단지) 5대, H2BL(2단지) 7대, H3BL(3단지) 6대(장애인주차포함)가 계획되어 있으며 상가 위치에 따라 상당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호실별 위치에 따라 상당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호실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입주자 등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단지의 진입로 및 울타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복리시설(상가 등) 주변 일부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한전변압기, 계단, 안내표지판, 화단, 조경수, 옹벽 및 조경석, 울타리, 쓰레기 분리수거함,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거시설(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또는 이용객은 주거시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진입을 위한 출입구 및 차로, 통로 등은 아파트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점자는 지상 주차장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입점자의 주차장 이용은 주차 가능 대수 범위 내에서 입점 후 입점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호실별 위치에 따라 재활용품보관소 이용의 이동 거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에 따른 외장재 시공은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외장재 차이에 따라 인접한 상가에 비해 외장재의 돌출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면 디자인에 따라 간판설치 위치 등이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유효 천정고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출입문, 창호의 크기 및 위치는 단지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호실 간 벽체는 건식 벽체 위주로 설치되어 있으나 위치에 따라 콘크리트 기둥 및 벽체, 조적벽체 블록 등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위치별 벽체 종류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 유리 및 유리 도어는 24T 로이복층유리가 설치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호실 내 전용공간 바닥은 비닐계 타일, 벽체는 도장, 천장은 석고시멘트판으로 마감되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실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은 사용승인 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관 및 색상, 내부 바닥 패턴 및 색상, 자재는 추후 본 공사 시 지정 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용부에 접한 점포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레벨 차이로 인해 실 시공시 출입문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레벨 여건상 근린생활시설 진입부, 출입문 등 위치에 진입 레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며, 도면 및 모형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도로기반 시설의 변경 및 장애인 동선 확보에 따라 계단 및 플랜터 화단 등 시설물이 설치되며,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레벨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각 호실별 바닥 레벨이 차이가 있으며, 도면 및 모형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점포 천장고는 도로레벨, 내부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높이가 상이 향오니, 도면을 통하여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단지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 계획 및 설치(장비 포함)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식재 사항 및 각종 시설물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승인 도서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점포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 하여도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지 내 설치되는 공지, 대지 내 도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지 내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입점자 부담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및 그에 따른 점포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전면 도로와 상가사이에 주정차 금지를 위한 보행자 안전펜스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점자 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도서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기타부대시설의 추가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외부조성 레벨에 따라 점포내부 진입 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 등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단지의 진입로 및 울타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복리시설(상가 등) 주변 일부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문주, 한전변압기, 계단, 안내표지판, 화단, 조경수, 옹벽 및 조경석, 울타리, 쓰레기 분리수거함, 가감차선, 실외기 설치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인근 조경의 경우 사업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에 인접한 생활폐기물보관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탈취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탈취기 설치는 입점자 공사부임)
-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예)육류 구이 및 치킨 판매 등)의 업종 입점시 냄새, 연기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점자 부담으로 개별 탈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연결 시 반드시 그리스트랩을 설치하여 기름기가 배수관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공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점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 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입면 외장재 및 시설물(캐노피 등)에 따라 일부실은 일조 및 통풍의 불리, 우천시 소음,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가 공용부분은 설비용량 확보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조건 이행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면적 증가시에도 계약금액의 변동은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계단실의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상가는 단지내 도로에서 이격되어 접근 및 물품이동에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단지배치도 내 상가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복리시설(상가 등)에 배분된 주차장은 상가별, 점포별 별도로 구획될 수 없으므로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점포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차 정차 및 활동공간,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잔디 외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인접 점포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배기시설, DA(환기구), 발전기실과 전기실 급배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와 인접한 상가는 냄새 및 매연,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점포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기계/전기, 배관/배선 등으로 인해 사용 면적 천장고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영업 및 인허가에 부가되는 시설(진열대, 간판,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 냉난방 등 추가되는 시설)은 입점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또한 급수 밸브, 바닥배수구, 가스공급밸브 등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입점자가 개별적으로 내부배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각 호실의 층고/천장고, 창호(출입문)의 크기 및 위치는 다를 수 있으며, 호실별 층고의 상이 및 창호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력벽의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임의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력벽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내부 구조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전기, 통신, 설비의 공사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부 칸막이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건축, 전기, 통신, 설비 등 해당 모든 공사는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부 전용면적에 기둥 및 구조벽체 등으로 인한 실사용면적이 호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과 출입구로부터 위치, 거리 등 종합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액을 책정하였기에 이를 확인 후 분양받은 부분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사용승인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철거 및 해체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천장고, 내부 기둥의 크기 및 위치, 칸막이 벽의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은 실시설계 및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점 시 일부 화장실에 인접한 호실의 경우 소음 및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점포별로 3상 380V/220V 공급되고, 분전반 내 차단기는 1상 220V 적용되며, 전기용량은 점포별 4kw, 공용전기 4kw로 제공되며 점포별 증설이 필요시에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한국전력공사에 추가 전기사용 신청 후 한국전력공사의 책임 분계점에서 점포까지 입점자 부담으로 증설할 수 있습니다.
- 각 점포 내 전기분전반이 설치되며, 전기계량기는 지정장소에 개별 점포별 통합 설치됩니다.

- 외부 간판용 전기배선은 점포 출입문 상부에 위치하며, 추가 간판설치를 위한 배관 및 배선은 입점자(매수인)의 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입주 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하여야 하며, 명의변경 지연 및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고지서 미수령, 사용료 체납, 단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자 등 선임 대상 건축물인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입점자는 입점자간 합의하에 각 관리자를 선임하시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내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점포 개별 주방 배기설비, 시스템에어컨 등의 추가시설물은 설치 전 관리주체와 협의(위치에 따라 설치 제한될 수 있음)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는 인접한 점포 및 공동주택에 소음전달 및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 천정 내부에는 위생 횡단배관이, 일부 점포 외부에는 가스 등 입상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점포 조건에 따라 급수배관(급수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공간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각 실에는 급수설비(15A), 배수설비(75A), 가스설비(20A) 각 1개소씩 설치되며, 급탕, 배기덕트 및 후드는 입점자 공사분임. 급배수설비 및 가스설비 설치위치는 입점 후 시공성, 사용성을 고려하여 임의위치에 설치되오니 필요시 입점자 공사분으로 배관연결(가스메타기와 이후 배관은 입점자 공사분)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 하수, 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상가용 한전개폐기/변압기가 설치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바닥, 걸레받이, 벽체, 천장 실내재료 마감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창호, 유리, 단열재의 열관류율 기준은 제조사에 따라 열관류율 값(W/m².k)이 변경될 수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준하여 설계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외관디자인(색채, 줄눈계획, 입면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화장실,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실외기실,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 비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점포 천정 내에는 타 점포의 냉난방 또는 전기공급을 위한 배관이 지나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I 기타 안내

- 주택(상가)분양보증에 관한 사항(본 상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함)

분양보증인	보증서 번호	보증 금액	보증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제01222024-101-0002200호	458,588,200원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공급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입점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월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시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 분	시행사	시공사
상 호	경남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경남기업 주식회사
주 소	충남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42, 11층(수송동, 이마빌딩)	충남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008262 110111-3753525	110111-0008262

- 홈페이지 주소 : <http://decent.honorsville.co.kr/website>
- 분양홍보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09, 101호
- 분 양 문 의 : 1877-6954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경남기업(주),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